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1496
----------	-------

제출년월일 : 2011년 2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44(2010.12.3)호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및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표준안」에 의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제3조)

-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기금의 용도(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제6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다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

- 심의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의안전문 : 불임

4. 기타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2. 31 ~ 2011. 1. 20(20일간)

다. 제 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수정가결

5. 관계법령 : 불임

-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

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20, 제정]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조례 표준(안) 시달 및 예산편성 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44(2010. 12. 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및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3. 또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재원을 '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1부

2. 자치단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3.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 필요성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5916 (2010.12.03.) 접수 세정과-21091 (2010.12.03.)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220-2753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 / 공개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 필요성

□□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완료

-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에 대해 자치단체간 의견합의('07.4월)로 지방세법상 근거규정 신설('07.12월)

※ 조세연구원(국세), 자산평가시스템 연구센터(일본) 등 전문연구원 설립추세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확보 필요

- 지방재정분권 및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발전이 필수적

- 특히, 국가 조세정책 기조가 기존 감면 중심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전환 중인 추세에 맞추어 지방세수 확충 필요

- 비과세·감면 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만성화 대비,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소득·소비세 후속조치 추진

-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의 세원이 이양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 확충이 충분한 수준은 아님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당초 부처합의대로 '13년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조속히 추진

- 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보완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분석 필요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효과 기대, 세수의 0.01% 기금 출연금은 세수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
 ※ 11년초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해 내주중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표준조례와 출연액의 '11년 예산 반영 지침 시달 예정, 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요청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2010. 12. 1.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 ◇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확보와 축적이 시급
- ◇ 설립에 필요한 법적조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자치단체간 일부 이견으로 보류된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을 조속히 재추진

I 추진 현황

- 자치단체 합의에 따른 지방세법상 설립근거 신설 ('07.12월)
 -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에 대해 자치단체간 의견합의('07.4월)로 지방세법에 근거규정 신설
- 시도·시군구협의회간 이견으로 설립 잠정 유보('08.4월)
 - '08년 설립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이견과 작은 정부 기조 등으로 연구원 설립 잠정 유보
 - * 당시 시도지사협의회는 산하에 연구원을 두고, 이사장·원장도 협회측 인사 요구
- 자치단체와 협의 재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10.6~11월)
 - (자치단체) 서울, 경기 등 모든 자치단체가 연구원 설립 추진 동의
 - (BH) 법정사항이고,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추진 입장

II

추진 방향

□□ 자치단체의 공동 산하연구기관으로 설립

- 자치단체 공동산하기관으로서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

* 시·도지사협의회 등 특정 협의회 부속기관으로 설립시 발전에 한계

□□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육성

- 지방세 연구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 차별된 전문성이 요구되며,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정책 추진에 중요

* 조세연구원(국세), 자산평가시스템 연구센터(일본) 등 전문연구원 설립추세

□□ '11년 2월까지 설립 준비를 마치고 '11년 3월 설립 추진

-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1년 예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 반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조례 제정 등

III

설립 계획

□□ 조 직

- (이사회) 이사장, 원장 포함 12인이내 이사로 구성(지방세기본법 145조)

- 이 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 동수로 추천

- 이사장 :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이사회 의결로 선출

* 부이사장제 설치 : 시군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 이사회 의결로 선출

- 원 장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연구조직) 정책세제,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부 체제하에서 박사 17명, 석사 7명 등 총 24명의 연구인력으로 운영
 - 한국조세연구원(109명) 대비 1/5 수준으로, 인력규모는 인력수급 동향, 과제규모, 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보수) 국책 경제·조세연구기관 수준 적용, 우수인력 유치
 - * KDI, 조세연구원 박사급 평균연봉 8400만원 수준

□□ 기 능

- (지방소득·소비세 발전) 국세의 세원이양 최초사례인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 (지방세 감면 정비) 기존의 조세지원확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전환중인 정책기조에 맞추어 감면 정비체계 구축
- (미래 정책과제 연구) 신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녹색세제 도입 등 미래 정책과제 연구

□□ 재 원

- '11년 소요재원은 46억으로, 자치단체가 보통세수의 0.01%(40억)를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 연구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달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기금적립 비율 및 연구원 출연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개정('10.12월)
 - * (현행) 세입액 0.02% 범위내 기금 적립 → 적립액은 연구원 출연 등에 사용
 - (보완) '11~'12년, 0.01~0.02% 범위내 기금 적립 → 그중 0.01%(40억) 연구원 출연
 - '13년이후, 0.015~0.02% 범위내 기금 적립 → 그중 0.015%(63억) 연구원 출연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직제, 예산, 정관 등 설립에 필요한 제규정을 미리 검토하고, 이사회 구성, 인력채용, 창립총회 등을 준비
 - 위원장은 지방세제관, 위원은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시도·시군구 위원은 동수로 구성
 - * 위원회 산하에 지방세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이사장 및 원장은 중립적이고 조세 전문성이 뛰어난 인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은 시도·시군구 동수 원칙 적용 (정관 반영)
 - * 지방세제관은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

Ⅳ

향후 추진일정

- 기금 설치 표준조례 및 예산 편성 지침 공문 시달 (‘10.12.1)
- 지방세연구원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운영 (‘10.12.15)
- 자치단체 조례 제정(‘11.2월) 및 지방세연구원 설립 (‘11.3월)

참고1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안)**

□ **설립 추진일정**

일 정	주요 추진업무
'10. 12월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산하 실무추진단 구성
'11. 1월	▪ 자치단체에서 이사·원장·이사장 등 협의·추천
'11. 1월	▪ 정관 및 각종 규정 초안 작성·검토
'11. 1~2월	▪ 연구원 채용공고 및 심사
'11. 2월	▪ 자치단체 기금설립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 편성 지원
'11. 2월	▪ 연구원 사무실 임차계약 및 시설공사
'11. 3월	▪ 창립총회 개최 (이사 및 정관 승인)
'11. 3월	▪ 연구원 설립허가(행안부) 및 설립등기

□ **설립준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안)**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구 분	구 성 (총 7명)
행안부 (1)	지방세제관(위원장)
광역 (3)	특·광역시 국장급 공무원 1, 도 국장급 공무원 1 특·광역시·도에서 협의 추천한 민간전문가 1
기 초 (3)	인구 50만이상 부단체장 1, 50만 미만 부단체장 1 시·군·구에서 협의 추천한 민간전문가 1

○ **실무추진단 구성**

구 분	구 성 (총 10명)
행안부 (4)	지방세정책과장(단장), 지방세정책과 담당 3
광역 (2)	특·광역시 세제팀장 1, 도 세제팀장 1
기 초 (2)	인구 50만이상 시군구 세제팀장 1, 50만 미만 시군구 세제팀장 1
협의회 (2)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장, 시군구청장협의회 행정과장

참고2**지방세 분야 정책연구 필요과제 목록****□□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지방세 정책과제
-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 경제위기 이후의 지방세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정책방향

□□ 지방세 구조 개편

- 지방재정 분권과 경제성장의 연계성 연구
- 자치단체의 지방세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조정 추진전략 및 조정방안
- 가격원리에 의한 광역과 기초간 지방세 세원조정 방안
- 지방세목간 세율 Re-Balancing 방안(자동차세와 주행세목)
- 지방세 공동과세(광역과 광역간, 광역과 기초간) 도입방안
- 지방교육세 개편방안

□□ 지방소득·소비세 발전

- 지방소득·소비과세 증장기 발전전략
- 지방소득세 독립세 및 세원 이양방안
-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발
- 선진국의 지방소득·소비과세 비교연구

□□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체계 개편방안
- 일몰도래 감면의 감면성과 평가 및 정비방안
-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비과세·감면제도 개편방안
- 국·공유재산 비과세·감면제도 개편방안
- 전국 형평성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감면조례제도 운영방안

□□ 신세원 발굴

- 지역자원개발세 개편방안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방안
-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 대형유통업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 레저세, 면허세 확대방안
- 고위험·고오염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
- 기타 물건(자동차 등)에 대한 시가 현실화 방안

□□ 지방환경세제 도입

- 지방세의 녹색세제 전환방안
- 지방에너지세제 확대 개편방안
-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체계 연구
- 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 개편방안

□□ 경기변동 및 지방세 수입 전망

- 중기 지방세 수입전망
- 중기 사회복지 재정수요 전망
- 부동산 거래세와 부동산 거래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 경기변동이 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방세 전자세정 장기 발전전략(온라인 납세서비스 개선)

□□ 재산세 발전방안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운영 및 개선방안
-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도 개선방안
-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체계(종합, 별도, 분리) 개편방안
- 재산세 납부제도 개선방안

□□ 취득세 발전방안

- 현금성 자산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 종가세 도입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안

□ 종과제도 개선

- 사치성재산 종과제도 개선방안
- 수도권 지방세 종과제도 개선방안
- 골프장 종과세 개선방안

참고3

지방세연구원 및 조세연구원 주요사항 비교

구 분	지 방 세 연 구 원	조 세 연 구 원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 직	<p>3부 1지원팀 (총 2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감사 - 정책세제연구부 - 재산세제연구부 - 조사분석부 - 행정지원팀 	<p>1실 2본부 1센터 1사무국 (총 13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감사, 연구자문위원 - 조세연구본부 - 재정연구본부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 사무국
예 산	46억원	212억원
연 구 인 력	<p>24명 (박사 17명, 석사 7명)</p>	<p>109명 (박사 34명, 석사 60명)</p>
연 봉 수 준 (박사급 평균)	8,400만원	8,400만원
주 관 부 처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설 립	2011년(예정)	1992년

참고4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규모 (보통세수의 0.01% 기준)

□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출연액	비 중	보 통 세
총 계	39.60	100.0	395,990
광역단체	26.25	66.3	262,490
기초단체	13.35	33.7	133,500

□ **광역단체**

(단위: 억원, %)

구 분	출연액	비 중	보 통 세
총 계	26.25	100.0	262,490
서울	9.33	35.5	93,330
부산	2.15	8.2	21,490
대구	1.39	5.3	13,950
인천	2.00	7.6	20,000
광주	0.75	2.9	7,510
대전	0.79	3.0	7,870
울산	0.75	2.9	7,520
경기	4.40	16.8	44,030
강원	0.48	1.8	4,790
충북	0.46	1.8	4,570
충남	0.57	2.2	5,690
전북	0.46	1.8	4,560
전남	0.38	1.4	3,780
경북	0.68	2.6	6,810
경남	1.28	4.9	12,770
제주	0.38	0.9	3,820

□ 기초단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출연액	비 중	자치단체 별 평균 출연액
총 계	1,335	100.0	5.9
서 울	180	13.5	7.2
부 산	27	2.0	1.7
대 구	22	1.6	2.8
인 천	30	2.2	3.0
광 주	8	0.6	1.6
대 전	12	0.9	2.4
울 산	24	1.8	4.8
경 기	497	37.2	16.0
강 원	50	3.7	2.8
충 북	54	4.0	4.5
충 남	89	6.7	5.6
전 북	53	4.0	3.8
전 남	65	4.9	3.0
경 북	93	7.0	4.0
경 남	131	9.8	7.3
제 주	0	0	0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2010. 12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도 조례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시·도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시장(도지사)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시·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시·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11~'12년은 10,000분의 1~2, '13년 이후는 10,000분의 1.5~2 범위 내에서 지정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시·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

시·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도지사)은 기금을 시(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관리)실장
2. 기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시장(도지사)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조례」를 준용한다.

※ 자치단체의 유사조례 준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군구 조례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시·군·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시·군·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시·군·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11~'12년은 10,000분의 1~2, '13년 이후는 10,000분의 1.5~2 범위 내에서 지정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시·군·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시·군·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을 시(군·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관리)실장
2. 기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구 ○○ 조례」를 준용한다.

※ 자치단체의 유사조례 준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수정안 설명자료

□ 입법예고시 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예고 조례안 일부수정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수정사유 및 근거 〉

- * 충청북도 세정과-57(2011. 1. 3)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보(아래 내용 참조)

- 출연하는 금액외에 자치단체별 조례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2011년 2012년은 기금의 10,000분의 1을 출연하고, 2013년부터는 10,000분의 1.5를 출연함.

- ※ 당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만큼만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제천시 공고 제2010 - 1410호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제3조)

-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기금의 용도(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4. 제정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

5. 제 정 안 : 별지참조

6. 입법예고 : 2010. 12. 31 ~ 2011. 01. 20(20일간)

7. 제출의견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99 담당자 : 엄 복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실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최영진	유홍열	최남용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0-1410호
3. 공고기간 : 2010. 12. 31 ~ 2011. 1. 20(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 조회수 : 55명
 -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공고안 1부 끝.